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에 고등학교 추가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6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에 고등학교 학생 추가	2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4
※ 참고자료	8
1.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환경교육 운영 현황	8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환류 제도	9

I. 제안경위

2025년 1월 9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에 고등학교 학생 추가

개정안은 학교 환경교육의 의무 적용 대상을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의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과학기술원 등의 학생으로 하면서, 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은 환경교육 의무 시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¹⁾.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모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²⁾, '24년 기준 고등학교 취학률이 93.9%³⁾인 상황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학생'도 환경교육의 의무 시행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교육의 의무적 시행대상에 고등학교의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키워 환경보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취학률은 (재적학생수÷취학적령인구)×100으로 계산되며, 2024년 기준 고등학교 취학률은 93.9%임 (자료: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다만,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법령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4)에 따른 학교의 장 전체를 환경교육 의무실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⁶⁾.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3(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u>

4)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5)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통하여 학교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환경교육 운영 현황>

6)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9,455개교의 학교(초등학교 6,183개교, 중학교 3,272개교)외에 2,380개교(고등학교)로 의무교육 시행대상이 확대되며,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 등이 포함될 경우 총 12,186개교가 의무교육 시행대상으로 확대됨.(2024년 말, 교육통계포털 기준) (자료: 환경부)

현행	개정안
	<u>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다만, 현행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와 활용 관련 제도가 미흡하므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환류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을 평가할

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우 학교 교육 자율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고⁸⁾,

환경부는 매년 환경교육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5년 단위로 국가 환경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⁹⁾¹⁰⁾ 이를 우선 적극 활용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참고로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일·안전·식생활 등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른 의무적 학교 교육 중 학교 교육을 평가하는 사례는 없음.

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 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 <참고자료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환류 제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환경교육 운영 현황

□ 환경교육 진행 과정

- **(교과 연계)** 국어, 사회, 도덕, 과학 등 교과 내 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 환경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환경시설 방문 등 자율 활동, 환경동아리 활동, 환경관련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환경교육 실시

□ 교육청별 주요 환경교육 운영 현황

구분	환경교육 운영 현황(2023.3.1.~)
서울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교과연계,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7시간 이상 편성 권장, 기후변화 환경교육 주간 계기교육 및 기후행동 실천)
부산교육청	생태환경교육지원사업비 지원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필수)(학교환경교육 실시계획 수립, 실천프로그램 계획 포함, 1교1생태환경 관련 동아리 운영),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 실시(필수)
대구교육청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수업 실시 및 내실화(8차시), 1교 1특색 환경교육 과제 운영, 환경교육(ESD) 학생 동아리 조직 운영,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탄소중립 시범 중점학교 운영, 기후변화환경교육 교재 발간 등
인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생태전환교실 시스템 구축 운영, 하천과 숲을 살리는 숲속학교 조성),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에코스마트팜 체험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운영 등), 생태시민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의무화 시수 운영
광주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교육 2시간 필수, 2시간 추가 권장, 환경교육주간 운영, 기후환경생태영역 자치학교 운영, 기후환경교육 교사연구회교원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환경생태교육 운영,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 등
대전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강화(범교과 연계 연간 6시간 이상), 1교1특색 환경실천과제 운영, 환경학생동아리 운영,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 운영, 환경교육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등
울산교육청	환경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무화(창의적체험활동 또는 교과연계 4시간 이상), 생태환경교육 실천 학생동아리 활동 교사환경수업 개발 동아리 생태환경연구학교 등 운영, 지역협력 학교환경교육 지원 강화 등
세종교육청	환경수업 운영 2시간 이상 권고, 학교별 교과와 창체활동 등 범교과 연계로 자율 운영, 학교환경교육담당자 지정, 탄소중립 시범학교 찾아가는 학교환경교육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 학생환경동아리 등 운영
경기교육청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지구지킴이 일일 프로젝트' 실시 (연간 2시간), 탄소중립 중점 시범학교-생태숲학교 운영,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보전 프로젝트 운영 등
강원교육청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 생명 다양성 교육 등을 학교 교육과정 필수 반영, 1교 1특색 생태환경 교육 운영, 탄소중립 중점 시범학교-강원 생태환경실천학교 운영 등
충북교육청	학교별 환경교육 추진계획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교육' 시수를 학교별 연간 2시간 이상 필수 편성 운영(교과와 창체 활용), 학교기본운영경비(환경교육) 지원 등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참학력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연간 4회 이상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계획 수립 및 실시), 학교별 환경교육 추진계획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조직 및 운영 의무화 등
전북교육청	범교과주제로 관련 교과 통합(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환경교과목편성 자율) 등에서 환경 교육 의무 실시, 모든 학교에 기후변화교육 경상운영비 지원 등
전남교육청	학교별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계획 수립(필수), 범교과주제로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과와 통합 운영(의무), 교육과정 연계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학년별 연 1회 운영 필수), 탄소중립 선도학교-실천집중주간 운영 등
경북교육청	범교과학습(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2시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실시, 환경교육주간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 지원을 통한 학교 맞춤형 생태전환교육 운영 등
경남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변경(중점교육활동 '생태전환교육' 편성 의무), 학생 환경동아리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프로젝트 수업 권장(학기당 1회), 학생 환경프로젝트 발표대회 운영 등
제주교육청	교육과정 내(교과 및 창체 연계) 생태환경교육 편성·운영(연간 2시간 이상 필수), 학교 연간 교육계획에 환경교육 주간 반영,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자료 공유 및 나눔,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등

※ 자료: 환경부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환류 제도

□(국가계획) 환경부는 5년마다 국가 환경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학교, 사회 등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환경교육 정책 환류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공개

< (참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
| 2. 환경교육의 현황 |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
|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
|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 2. 환경교육 활동·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시기,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그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자료: 환경부